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395
------	------

발의일자 : 2023. 9. 5.

발 의 자 : 윤영희 의원

찬 성 자 : 장규권, 이인식 의원

1. 제안이유

이상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폭염 대비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폭염 저감조치,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마. 폭염 취약계층 지원(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23. 9. 6. ~ 9.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폭염주의보: 일 체감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되는 경우
 - 나. 폭염경보: 일 체감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되는 경우
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시열섬현상을 저감 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도시열섬현상”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도시 중심부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
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대비 종합대책(이하“종합대책”이라 한
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3.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폭염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 안개형 분사 장치, 시원지붕 등 폭염저감 시설 설치

2.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 시설 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저감 조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 장비 수리 및 냉방 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화, 방문 등 건강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 용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3. 8. 17.] [법률 제19406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 2019. 5. 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23호, 2019. 5.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9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31조 및 영 제39조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 시킬 위험 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구민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